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 원자력안전법제로의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지 영**

목차

- I.
- II. 프랑스 원자력 안전법제
- III. 프랑스의 원자력안전관련 조직
- IV. 프랑스 원자력 투명성 확보 체계
- V. 결론

국문초록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원자력에너지에 의존율이 높은 국가이다. 국내 부존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소비율이 높은 프랑스는 후쿠시마사태 이후에도 원자력에너지에 지속적인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는 원자력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단계적 원전폐쇄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고, 프랑스와 같이 장기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내에서의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단기간 내에는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사례와 법제는 원전을 일정기간 사용할 것으

* 이 논문은 2013년 9월 13일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3.11 이후 각국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에 발제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예상되는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법은 2012년 오르도넝스에 의해 환경법전에 편입됨으로써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환경법상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원자력법제의 환경법전으로의 편입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제에 있어서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 더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정책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리스크의 증가로 기술적 안전성과 더불어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분야에서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관련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환경법전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법상의 사전예방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의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원자력사용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의 지역정보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절차가 투명성 확보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원자력안전에 관한 의회의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어 있다.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 이후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 행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자력관련정책을 확인하고 검토함으로써 정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원자력안전법제에 있어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원전의 건설허가 시에 추후에 원전시설의 정지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안전검사에 있어서 상시적인 통제수단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한다.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검사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I.

1. 원자력 정책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국가이다. 국내의 부존자원이 인접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에너지소비는 높은 프랑스

1970년대 이후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인 친화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원자력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 재검토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여러 차례의 국제적인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원전정책은 여전히 친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내 모든 원전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반대로 프랑스가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¹⁾ 사실 프랑스의 원자력친화정책은 1970년대의 석유과동과 관련이 깊다. 1970년대 석유과동을 겪은 후, 프랑스는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첫째,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체계개선을 위한 정책, 둘째,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의 수입원 다변화 정책, 셋째, 1950년대 이후 진행된 수력발전 건설 프로그램 이후에 상업용원자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에너지믹스(mix énergétique)’의 다변화정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70년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지원 프로그램이 수립·시행되고, 그 결과 오늘날 프랑스는 58기의 원자로에서 63G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규모로 보면, 전 세계에서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원자력발전 사용국이다. 또한 약 30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결과로 현재 프랑스 전력공급의 78%를 원자력발전이 담당하고 있고 약 12%가 수력발전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²⁾ 즉 에너지믹스 내에서 원전에 대한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원자력 이용이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방사선 등으로 인한 인체 및 자연환경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관리의 측면에서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법제는 원자력시설에 있어서의 기술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전 이용의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³⁾ 이러한 법제 개선방

1) ,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2-3면.

2) <http://www.developpement-durable.gouv.fr/Nucleaire-et-politique-energetique.html> 검색일 2013. 8. 30.

3) 프랑스 “에너지법전(Code de l'énergie)”은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 기본시설과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환경법전”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법전 제L. 313-1조는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기본시설은 환경법전 제L. 593-1조 이하의 규정과 2006년 투명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동법전 제L. 313-2조는 방사성폐기물의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규정은 환경법전과 “방사성폐기물과 물질의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법(la loi n°

2012년 오르도녝스로 원자력기본시설에 관한 안전법제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환경법전에 포함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원자력에너지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업용 원자력에너지에 국한시켜 보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은 대부분 원자력산업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거나 원자력 정책결정 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국한시킬 수 있을 것이다.⁴⁾ 사실 프랑스의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은 초기부터 군사적 목적과 민간 목적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원자력 이용에만 국한된 우리와는 다르다.⁵⁾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은 군용과 민간용으로 구분하고, 민간용인 경우에는 상업용 발전, 연구용 발전, 의학적 사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원자력 사용의 목적과 함께,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유럽의 인접 국가들에 비해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적은 프랑스로서는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가격의 안정성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당위성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의 폐지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의 강화로 논의가 전개되는 근거가 이것이다.⁶⁾

프랑스 원자력에너지 친화적인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도출된다. 첫째, 원전의 사용으로 에너지 자주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사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1973년 에너지자주율(taux d'indépendance énergétique)을 22.7%에서 오늘날 50%로 향상시켰다. 둘째, 원자로 발전 생산 전기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전기생산비용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가스나 석유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 셋째, 원자력에너지는 온실효과에 대

2006-739 du 28 juin 2006 de programme relative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échets radioactifs)”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Jean-Marie PONTIER, *Les politiques et le droit de l'énergie nucléaire en France*, 경희법학 제45권 제4호, 2010, 446면.

5) Jean-Marie PONTIER, *Les politiques et le droit de l'énergie nucléaire en France*, 경희법학 제45권 제4호, 2010, 445-446면.

6) 홍기원, 원자력의 위험관리에 관한 최근 프랑스 정치계의 쟁점: 2011년 3월 일본 福島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프랑스 양원에서의 토의쟁점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2호, 2011, 101면.

7)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La synthèse publique de l'étude des cout de référence de la production électronique*, 2008, p. 3.

대응성이 높다. 원자력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다른 에너지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유리하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OECD 30여개 회원국 중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력생산의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은 KWH당 6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가스는 430그램, 석탄은 800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원자력에너지의 장점이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즉 리스크에 비해 큰 것으로 프랑스는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원자력에너지 사용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자력 친화적인 정책은 2005년 프로그램법을 통해 재확인된다. “2005년 7월 13일 에너지정책프로그램법(LOI n° 2005-781 du 13 juillet 2005 de programme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은 첫째 에너지가격경쟁력의 확보, 둘째 온실효과와 가중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셋째, 모든 이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여 사회적·지역적 통합을 보장하여, 넷째 에너지 확보의 국가적 자주와 에너지 안보의 강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⁸⁾ 이를 위해 국가는 에너지 수요를 통제하고, 에너지공급원을 다양화하며,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를 촉진하고, 수요에 상응하는 에너지의 운송 및 저장 수단을 확립해야 한다(제2조). 또한 국가는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보건상·환경상 영향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법 제4조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프랑스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2010년까지 프랑스 에너지 수요의 10%를 재생에너지로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의 안전성과, 에너지 자주, 경쟁력, 온실효과 방지 및 관련 산업에 탁월한 원자력발전에너지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2. 사고의 영향

2011년 3월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원자력안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토대로 프랑스 “원자력안전

8) 조항은 “2011년 5월 9일 오르도넝스(L'ordonnance n°2011-504 du 9 mai 2011)”에 의해 폐지되었다.

(Autorité de sûreté nucléaire: ASN)⁹⁾는 원전시설들에 대해서 “보충적 안전성 평가(l'évaluation complémentaires de sûreté)”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프랑스 내의 원자로는 운영을 계속하는 데 충분한 수준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의 원자력 안전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¹⁰⁾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 6월 28일자 지침을 통해 2011년 평가대상 원전주요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비상시 원자력안전체계(noyau dur)¹¹⁾’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각 원자로마다 ‘원자력 신속대응팀(Force d'action rapide nucléaire)¹²⁾’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원자력 사고발생을 위한 대책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불가항력의 원전사고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위기발생 시에 위기관리방법, 방사성폐기물의 유기로 인한 영향평가를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약 5억 유로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¹³⁾ 프랑스 국내적인 대응 이외에도, 국제적인 단계에서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조치로 네 가지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첫째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실행계획에 따

9) 'Autorité de sûreté nucléaire'를 불어로 직역하면 '원자력안전청'이 된다. 그러나 ASN의 의사결정이 5인으로 구성된 '평의회(collège)'에서 이루어지고, 평의회는 구성원이 상근직이라는 점, 평의회를 뒷받침하는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비추어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Panorama énergies-climat*, 2013, p. 111.

11) 비상시원자력안전체계란 다수의 원전시설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위기대응조직과 장소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상시원자력안전체계(noyau dur)는 극한의 상황에 대비한 견고한 물적·조직적인 수단을 의미하며, 목적은 핵연료의 용해 사고를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진행을 제한하고, 대규모 방사성폐기물의 폐기를 제한하며, 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위기 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v. Décision n°2012-DC-0292 de l'Autorité de sûreté nucléaire du 26 juin 2012 fixant à Électricité de France - Société Anonyme (EDF-SA) des prescriptions complémentaires applicables au site électronucléaire du Tricastin (Drôme) au vu des conclusions des évaluations complémentaires de sûreté (ECS) des INB n°87 et 88.

12) 프랑스 전력공급회사인 EDF에 의해 비상시원자력안전체계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전력용 원자력 발전기의 경우에 원전사고발생지역에서 적어도 24시간 내에 보충적인 긴급대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한 인적·물적 조직을 의미한다.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1*, p. 25.

13)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Panorama énergies-climat*, 2013, p. 111.

투명성을 강화하고, 둘째 원전관련수입의 일부를 적립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인력을 교육시키고, 셋째, 위기 시에 국제적 단계에서의 ‘신속대응팀’을 창설하고, 마지막으로 원자력에 책임 있는 국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¹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이 ‘탈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¹⁵⁾, 프랑스는 원자력 의존율을 낮추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수와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2012년 9월 28일 “원자력정책위원회(Conseil de politique nucléaire)”에서 2025년까지 프랑스 전력생산량 중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75%에서 50%까지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올랑드 대통령은 “페센하임(Fessenheim)”에 있는 2기의 원자로를 늦어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가동중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프란시스 롤탕귀(Francis ROL-TANGUY)를 원전폐쇄 및 페센하임 재정비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프란시스 롤탕귀 장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원전부지의 상업적, 기술적, 사회적 책임 하에서 재정비를 위해 2016년까지 원전폐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올랑드 대통령은 플랑빌(Flamville)의 ‘유럽형가압경수로(European Pressurized Reactor, Réacteur pressurisé européen: EPR)’건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원자력반응로는 자신의 5년간의 임기 내에 건설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¹⁶⁾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에 대한 문제는 계속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문제로 귀결된다. 독일과 같이 단계적 원전폐쇄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고, 프랑스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에너지 소비

14)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Panorama énergies-climat*, 2013, pp. 111-112.

15) ‘탈핵’ 움직임은 비단 후쿠시마 사고에서 촉발된 것은 아니다. 이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하여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여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및 독일에서 원자력에너지의 폐기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7년 프랑스가 원자력고속증식로의 폐쇄를 결정한 것도 이해되어야 한다. Michel Prieur, *Droit de l'environnement*, 5éd., Dalloz, 2004, p. 681.

16)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Panorama énergies-climat*, 2013, p. 111.

및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내에서의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¹⁷⁾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기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기간 내에 정부가 원전에너지의 폐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원전에너지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프랑스의 사례와 법제는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비교법적 측면에서 프랑스 원자력안전법제를 연구할 타당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원자력관련법제에 있어서 군사적 이용, 연구적 이용, 의료적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법제 및 원전시설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법제는 제외하고, 상업용 원자력 발전 위주로 프랑스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의 원자력 안전과 조직법제에 대해서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II. 원자력안전법제

“환경을 위한 국가적 책무에 관한 2010년 7월 12일 법(la loi n° 2010-788 du 12 juillet 2010 portant engagement national pour l'environnement)”¹⁸⁾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정부는 환경법전에 편입되지 않은 법률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환경법전 입법편을 오르도넝스(ordonnance)로 개정할 것을 수권 받았다.¹⁹⁾²⁰⁾ 이를 위해 동오르도넝스는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민사책임법(la loi n° 68-943 du 30 octobre

17)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믹스의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v. Conseil national du débat, *Synthèse des travaux du débat national s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de la France*, 2013, 44 p.

18) 흔히 “그르넬II 법(loi Grenelle II)”이라고 지칭한다.

19)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38조는 “정부는 자신의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의회에게 권한을 정하여 오르도넝스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오르도넝스는 공포시 때의 심의를 거쳐 각료회의에서 확정된다. 오르도넝스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승인법안이 수권법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무효이다. 오르도넝스는 명백하게 승인되어야만 한다. 동조 제1문에 규정된 기한이 종료되면 오르도넝스는 입법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프랑스에서의 오르도넝스에 관한 정의와 통제에 관해서는 v. Louis FAVOREU, Patrick GAÏA, Richard GHEVONTIAN, Jean-Louis MESTRE, Otto PFERSMANN, André ROUX et Guy SCOFFONI, *Droit constitutionnel*, 14e éd., Dalloz, 2012, p. 864 et s.

1968 relative à la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e domaine de l'énergie nucléaire)", "자력분야의 투명성·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la loi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 loi TSN)" 및 "방사선물질과 폐기물의 지속적 관리에 관한 2006년 6월 28일 프로그램법(la loi n° 2006-739 du 28 juin 2006 de programme relative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échets radioactifs)"의 규정을 환경법전에 편입시킴으로써 동법전을 개정하게 되었다. 2012년 오르도낭스²¹⁾에 제정으로 원자력기본시설에 관한 규정, 공공에 대한 정보제공 정책과 투명성 및 원자력관련 활동에서의 책임성 관련 조항들이 동일한 하나의 법전으로 편입됨으로써 일관성 있는 원자력관련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²²⁾ 원자력안전관련법제의 일원화는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법제의 분법화 경향²³⁾과는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법에 의해서 규율되던 원자력안전관련 법제가 단일한 하나의 법전(환경법전)에 편입됨으로써, 원자력안전을 위해 정부와 시설운영자는 "환경헌장(la Charte de l'environnement)",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및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에 규정된 8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다. 첫째는 "(사전)예방의 원칙(le principe de prévention)"이다. 이 원칙은 수용가능한(acceptable) 경제적 가격으로 가능한 한 최상의 기술을 토대로 규칙과 행위에 의해 모든 환경침해를 고려하는 것이다. 둘째, "원인자부담(le principe pollueur-payeur)"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환경침해에 책임이 있는 원인자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의 비용을 지원한다. 셋째, "사전배려의 원칙(le principe de précaution)"이다. 이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수준에서 불확실성이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넷째, "참여의 원칙(le

21) Ordonnance n° 2012-6 du 5 janvier 2012 modifiant les livres Ier et V du code de l'environnement

22) Rapport du 06/01/12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latif à l'ordonnance n° 2012-6 du 5 janvier 2012 modifiant les livres Ier et V du code de l'environnement. v. JO n° 5 du 6 janvier 2012.

23) , 그린에너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연구,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2011, 157면.

24) 이렇듯 프랑스 환경법에서는 '(사전)예방의 원칙(le principe de prévention)'과 '사전배려의 원칙(le principe de précaution)'을 구별하고 있다. "사전배려원칙을 전통적인 예장의 원칙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배려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것인 반면에 예방의 원칙에서의 예방은 확인된 위험에 대

principe du participation)”. 즉 국민은 공공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당성 원칙(le principe de justification)”은 원자력의 사용은 원자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노출의 위험보다 이득이 클 경우에만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섯째, “최적화 원칙(le principe d’optimisation)”은 전리성 방사선으로부터의 노출은 가능한 최소 침해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 “제한성의 원칙(le principe de limitation)”은 의료와 연구 목적 이외의 원자력 활동에서 기인하는 전리성 방사선에의 노출은 법규로 제한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사업자의 일차책임의 원칙이 있다.²⁵⁾

즉, 프랑스의 원자력안전법제는 기술적인 안전만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리스크를 환경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을 따를 경우에 사전배려의 원칙이나 투명성의 원칙이 원자력안전법제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게 된다. 사실,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리스크는 위험발생의 구체적인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즉 위험 발생의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또는 대비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²⁶⁾ 따라서 원자력안전에 있어서 “사전배려의 원칙(le principe de précaution)”이 준수되어야 한다.²⁷⁾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관련 법제는 절차와 조직에 근거한 기술적 안전성에만 초점 맞추어져 있고, “사전배려의 원칙” 적용에는 미온적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의 환경법상 원칙 준수에 관한 입법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것이다. 사전배려원칙은 예방의 원칙에 의한 위험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원칙이다. 전통적인 예방의 원칙은 확실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위험,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은 후일 확실한 위험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이미 늦게 되기 때문에 이를 보다 조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험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배려의 원칙이 등장하게 되었다.” 박균성,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2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8, 147면.

25)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p. 18-19.

26) 김태호,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담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49면.

27) 박균성, 원자력 안전법제의 재검토,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87면.

원칙의 일반적인 적용 이외에, 원자력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프랑스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 제L. 591-1조는 원자력안전성(la sécurité nucléaire)에는 '원자력안전(la sûreté nucléaire)'과 '방사선방호(la radioprotection)', 방사선 예방, 고의적인 행위에 대한 대비 및 사고발생 시에 민간보호 행위를 포함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성의 하부 개념에 속하는 '원자력안전(la sûreté nucléaire)'에는 사고예방과 사고발생 시에 과급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원자력설계(conception), 건설, 운용, 정지, 기본시설의 해체 및 방사능물질의 운송과 관련한 기술규정과 조직규정이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프랑스 원자력 안전법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1)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INB)의 허가(l'autorisation)

원자력안전법제에서 “원자력기본시설(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INB)”이란 첫째, 원자로(les réacteurs nucléaires), 둘째, 썩세이 데따의 데크레로 정하는 특징을 가진, 핵연료의 준비, 농축, 제조, 처리 및 보관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보관 및 저장 시설²⁸⁾, 셋째 방사성과 핵분열 물질을 포함하는 시설 및 썩세이데따의 데크레로 정하는 특징에 부합하는 시설²⁹⁾, 마지막으로 분자가속기(les accélérateurs de particules)를 의미한다(환경법전 제L. 593-2조). 이러한 원자력기본시설(INB)의 건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환경법전 제L. 593-7조 1문). 건설허가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수준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설운영자가 설계, 건설, 운용에 적용되는 기술 및 조직에 관한 조치들과 해체,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전정

28) (les combustibles nucléaires) 제조공장, 방사선연료처리공장, 방사성폐기물처리 및 저장 시설을 의미한다.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54.

29) 방사능 물질의 처리, 저장, 사용 시설과 이를 포함하는 폐기물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54.

후에 시설 유지 및 감시에 대한 일반적 원칙들이 충분히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의 발생 시에 장해를 제한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발급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593-7조 2문). 즉 건설허가 당시에 시설운영자는 원전시설 정지 후의 대책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건설허가를 발급함에 있어서 시설운영자가 시설운영 시에 시설해체, 원상회복, 시설부지의 감시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당 혹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원자력 정지 및 이후의 유지 및 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운영자의 기술적·재정적 여력을 고려한다(환경법전 제L. 593-7조 3문).

건설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ASN)의 심의와 공공조사(une enquête public)의 달성 이후에 발급된다(환경법전 제L. 593-8조 1문). 건설허가를 발급하는 경우에 시설의 특징과 지역을 결정하고, 당해시설이 운용개시기한을 정한다(환경법전 제L. 593-8조 2문). 건설허가를 함에 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환경법전 제L. 593-4조에 규정된 일반적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법익의 보호를 위해 시설의 설계, 건설,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593-10조).

원자력기본시설의 건설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법전 제L. 593-38조³⁰⁾에 따른 공세이 데파의 테크레에서 정한 조건하에서 원전시설의 운영을 허가하고, 원자력기본시설에 가압장치 설비규정에 입각하여 개별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593-11조). 허가신청에 대한 심의 중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법전 제L. 593-1조³²⁾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일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법전 제L.

30) 제L. 593-38조 “공세이 데파의 테크레로 원자력기본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 형태, 특히 추후에 운영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규정과 제L. 593-37조의 단순허가의 절차규정에 대해서 정한다.”

31) 환경법전 제L. 593-37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단순허가(une autorisation simplifiée)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발급된 허가는 갱신될 수 없다. 이 단순허가의 경우에도 공공의 의견개진 이후에 발급된다. 의견개진 절차는 한 달 동안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의견개진서류를 공개하고, 취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관계 행정청은 의견개진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공개한다. 공공의 의견개진의 결과를 포함하는 서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다.”

32) 환경법전 제L. 593-1조 “동법전 제L. 593-2조에 열거된 원자력기본시설은 원자력안전, 공공보건, 공중위생 혹은 자연 및 환경보호에 있어서 위험과 장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법전 제L. 596-1조 이하의 규정들만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 환경법전의 일반적인 관리대상시설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593-13 따르면, 원자력기본시설이 건설허가 상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청의 심의를 거쳐 건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법전 제L. 593-1조에 규정된 원자력안전, 공공보건, 공중위생, 환경보호와 '시설부지의 원상회복(la remise en état du site)'을 위해 허가신청자에게 특별한 규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원전시설의 운영자가 변경되거나, 원전부지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원전시설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득해야 한다(환경법전 제L. 593-14조 제1항).

(2) 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법제

원자력기본시설의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가장 최신의 국제적 실무지침(les meilleures pratiques internationales)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재검사(réexamen)를 실시한다. 재검사는 원전시설의 상태, 운용 중에 획득한 경험, 유사시설에 적용되는 지식 및 규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원전시설에 적용되는 규정과 원자력안전 등의 목적달성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과 장애의 평가를 현실화 하는 측면에서 원전시설의 상황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안전성재검사(les réexamens: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10년마다 시행된다. 그러나 허가결정시에 원자력기본시설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593-18조).

시설의 운영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장관(현재는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 장관)에게 환경법전 제L. 593-1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보고한다. 제출된 보고서의 분석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지침을 부과할 수 있다. 동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장관과 제출된 보고서의 분석에 대해서 협의한다(환경법전 제L. 593-19조). 원자력안전, 공공보건, 공중위생 및 자연·환경 등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의 발생이 원전기본시설 등의 지정 이후에 확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상 이에 대한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운영자는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593-21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세이 데따의 테크레에서 정한 원자력안전, 공공보건, 공중위생, 환경보호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조치들에 의해서 충분히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자력기본시설의 중국적 가동정지 및 해체를 명령할 수 있다(제L. 593-23조). 또한 원자력기본시설이 2년 이상 가동을 멈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운영재개를 금지하거나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정해지 기한 내에 영구정지허가신청과 시설해체허가신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593-24조).

2. 등의 영구정지·해체 및 지정해제

(1) 정지 및 해체에 관한 규정

원자력기본시설의 영구정지 및 해체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은 신청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과 시설부지의 향후 활용계획, 원자력안전, 공공보건, 환경보호 등에 대한 위험과 장해를 예방 및 제한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정지, 해체방식, 폐기물관리 및 향후 설치시설 감시 및 유지에 관한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환경법전 제L. 593-25조).

영구정지 및 해체의 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공공조사 이후에 발급된다(환경법전 제L. 593-26조 제1문). 동 허가는 해체의 특수성, 해체실행기한 및 해체 이후의 시설운영자가 취해야 할 행위들의 유형을 정한다(환경법전 제L. 593-26조 제2문). 영구정지 및 해체에 관한 허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환경법전 제L. 593-4조³³⁾에 규정된 일반적인 규정들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자력안전, 공공보건, 공

33) 제L. 593-4조 원자력안전, 공공보건, 공중위생, 자연 및 환경보호를 위해, 원자력기본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영구정지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의 정지, 유지 및 감시는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에 적용을 받거나 특정 영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은 시설에 특정한 장비의 설치 및 사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시설에 특별적용형태로 규정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일반적인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확정된다.

, 자연 및 환경보호에 필요한 해체규정들을 정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593-27조).

(2) 저장시설의 정지 등에 관한 규정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에는 원자력기본시설의 정지, 해체 및 지정해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환경법전 제L. 593-29조).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최종 정지 및 감시단계로의 이행은 허가사항이다.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폐쇄허가신청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충분히 예방 및 제한할 수 있도록, 영구정지에 관한 조치와 시설부지의 유지와 감시에 관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환경법전 제L. 593-30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폐쇄허가신청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조사 달성 이후에 발급된다. 폐쇄허가를 발급함에 있어서 영구정지 이후에 시설운영자가 취해야 할 행위들의 유형을 정한다(환경법전 제L. 593-31조).

(3) 지정해체에 관한 규정

원자력기본시설이 환경법전 제L. 593-25조 이하의 일반적인 원자력시설 등에 관한 규정 혹은 환경법전 제L. 593-30조 이하의 조문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시설의 규정에 의해 해체되었을 경우 및 환경법전의 원자력기본시설에 관한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장관의 인가를 거쳐 시설지정해체결정을 한다(환경법전 제L. 593-33조).

3. 시설의 검사 및 통제

우리법제에서 발전용원자로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동법 제22조와 시행령 제26조의 계량관리검사, 동법 제10조 및 제16조와 시행령 제31조의 품질보증검사, 동법 제22조 진단과 시행령 제35조의 정기검

및 동법 제23조 및 동시행령 제36조 이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있다.³⁴⁾ 이를 안전검사제도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로 구분한다.³⁵⁾ 실제 원자력시설 등의 안전검사 및 주기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담당하고 있다.³⁶⁾ 프랑스의 경우에는 환경법전 제L. 593-18조에 따라 10년마다 한 번씩 원자력기본시설의 운영자가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주기적 안전성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를 동법전 제L. 593-1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련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지침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 외에 안전검사제도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검사를 수행하게 하지만, 프랑스에서 안전검사의 주체는 원자력기본시설운영자이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07년 11월 2일 원자력기본시설 및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물질의 수송의 통제에 관한 데크레(Décret n°2007-1557 du 2 novembre 2007 relatif aux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et au contrôle, en matière de sûreté nucléaire, du transport de substances radioactives)” 제23조는 원자력기본시설의 운영자는 매년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방호에 관한 조치와 그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 방사성폐기물관련 조치의 성질과 결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늦어도 다음연도 6월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원자력 안전검사제도에 있어서 우리와 차이점은 “원자력안전감독관(Inspecteurs de la sûreté nucléaire)”을 통해 상시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환경법전 제L. 596-1조는 “원자력기본시설과 방사선물질의 수송은 원자력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이 감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신의 공무원 중에 임명한 감독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감독관의 임무는 기존의 원자력기본시설 이외에 환경법전 제L. 593-7조에 규정된 건설허가신청시설 및 동법전 제L. 593-5조 혹은 제L. 593-33조의 대상이 되는 지정해제 원자력기본시설에까지 확장된다(제L. 596-3조).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원자력안전감독관은

34) , 앞의 논문, 45면 이하. ; 박균성, 앞의 논문, 173면 이하 참조.

35) 김태호, 앞의 논문, 45면.

36) 김종천, 앞의 논문, 133면.

항상 방문할 수 있고, 방사성물질의 수송, 저장, 적재, 하역을 통제한다(제L. 596-4조). 또한 감시와 통제의 임무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감독관은 필요한 모든 서류와 문서에 접근해야만 하며, 복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혹은 소환하여 필요한 정보와 증빙서류들을 수집해야만 한다(제L. 596-5조). 이러한 조사결과 시설의 운영자 혹은 핵물질의 수송에 책임이 있는 자의 관련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형사소추와는 별도로 이해 당사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적발된 사안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제L. 596-14조).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원자력 시설 등에서의 안전 및 주기성 평가는 시설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석을 통해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자발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분야에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감독관이 상시적으로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를 통해 원자력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4.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법제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지속적 관리프로그램에 관한 2006년 6월 28일 법률(*la loi du 28 juin 2006 de programme relative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은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³⁷⁾ 동법

37) 방사능폐기물(*les déchets de Haute Activité: HA*)과 중준위 방사능폐기물(*les déchets de Moyenne Activité à Vie Longue: MAVL*)에 대한 3가지 처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고·중준위 폐기물(*les déchets de HA-MAVL*)은 분리·재처리(*séparation-transmutation*)방식과 재처리를 위한 심층 저장방식(*le stockage réversible en couche géologique profonde*), 그리고 영구저장 방식(*l'entreposage*)이 있다. 특히 고·중준위 폐기물의 기준처리방식인 두 번째 방식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청(*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ANDRA*)”는 2013년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공토론(*debat public*)과 2015년에 착공을 위한 폐기물 저장시설의 건설허가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심층저장시설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les déchets de Faible Activité à Vie Longue: FAVL*)의 처리 방식을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은 2012년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구체화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각기 다른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가능한 관리 방식 즉, 격납, 분류, 재처리, 저장의 방식에 따른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Panorama énergies-climat*, 2013, p. 112.

방사성폐기물 전체의 관리, 특히 3년마다 수립되는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 관리 국가계획(Plan national de gestion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PMGMDR)”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³⁸⁾ 방사성폐기물계획(PMGMDR)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방사성 물질과 폐기물에 관하여 현존의 관리 방식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시설(installation d’entreposage)’과 ‘저장시설(installation de stockage)’의 예측수요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동 계획은 필요한 저장시설의 용량과 저장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³⁹⁾

환경법전 제L. 542-12조는 “방사성폐기물관리청(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ANDRA)”은 방사성폐기물의 장기간의 관리 수행을 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은 프랑스 내에서 방사성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수행하고, 심층의 임시저장과 저장시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조정하며, 고·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방식에 관한 비용평가를 수행하고, 원자력 안전을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하고, 관계 행정청에게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8) 정부는 2012년 말에 의회의 “과학·기술정책 의회사무국(l’Office parlementaire d’é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OPECST)”의 평가를 받기 위해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 관리 국가계획(Plan national de gestion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PMGMDR)”을 제출하였다. 동 계획은 핵물질과 폐기물의 성질과 방사성양 등에 상관없이 투명하고,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조사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2006년 6월 28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이후, 제3차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 관리 국가계획(PMGMDR)”은 제1차 및 제2차 관리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대상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왔다. 동계획은 제2차 계획인 2010-2012 관리계획 평가 상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ASN)”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따라 핵물질 관리 및 폐기물의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며, 연구와 개발에 있어서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적을 정한다.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Panorama énergies-climat*, 2013, p. 112.

39)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39.

III. 원자력안전관련 조직

원자력안전의 통제조직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1994년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la convention sur la sureté nucléaire,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CSN)”⁴⁰⁾을 기초로 한다. 동 협약 제7조는 “각 체약국은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는 회원국에게 “제7조에 규정된 입법과 행정규칙을 적용을 담당할 조직을 창설 혹은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 조직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협약에 입각하여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 방호에 대한 통제는 원칙적으로 의회와 정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이다.⁴¹⁾ 각각의 권한은 “원자력분야의 투명성·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la loi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 loi TSN)”에 처음 규정되었고, “2012년 1월 5일 환경법전 제1장 내지 제5장 개정 오르도넌스(Ordonnance n° 2012-6 du 5 janvier 2012 modifiant les livres Ier et V du code de l’environnement)”에 의해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에 규정되었다.

사실 프랑스에서 TSN법과 환경법전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원자로의 건설과 운영의 허가에 관한 일반법이 없었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기존에 “1961년 8월 2일 법률”⁴²⁾ 제8조에서 원자력에 의한 대기오염의 경우 동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원자력에 의한 대기오염과 일상적인 대기오염을 동일한 규정으로 취급하였다.⁴³⁾ 그러나 원전시설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의 심각성은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오염과는

40) 체결 과정과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기갑, “원자력 안전협약의 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문총 제40권 제1호, 1995, 111-124면 참조.

41)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u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74.

42) Loi n° 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43) 현재 환경법전 제L. 227-1조는 “방사선 물질 및 동법전 제L. 593-1조 상의 원자력기본시설의 건설, 운영, 감시 등에서 발생한 오염은 대기오염에 관한 일반적인 동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양자를 분리하고 있다.

과급효과 등에 있어서 동일할 수 없다. 원전시설에 의한 오염은 양적으로 큰 오염일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의 문제와 기술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전시설의 지정과 운영 해체 등에 있어서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진정한 정보권의 보장을 위해 이러한 원전시설 등에 관한 법제는 환경법전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⁴⁴⁾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TSN법이 제정되어 원자력시설에 관한 안전에 대한 일반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2012년 1월 5일 환경법전 제1장 내지 제5장 개정 오르도넌스(Ordonnance n° 2012-6 du 5 janvier 2012 modifiant les livres Ier et V du code de l'environnement)”에 의해 환경법전에서 원자력안전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법전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원자력관련 통제는 입법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Autorité de sureté nucléaire: ASN)”가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의회는 의회 내의 “과학·기술정책 의회사무국(l'Office parlementaire d'é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OPECST)”과 감사를 통해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방호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의회사무국(OPECST)”은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방호에 대해 다수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ASN)은 동사무국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방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제정한다.⁴⁵⁾ 또한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원자력기본시설(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INB)’과 관련한 - 특히, 원자력 설치 및 해체 허가, 수인한도를 넘는 위험의 경우에 폐쇄와 관련한 허가- 행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프랑스 정부부처에서 원자력안전에 관련해서는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 장관(le minist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이 담당하고, 방사선 방호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과 “사회·건강 장관(le ministre des Affaires

44) Michel Prieur, *Droit de l'environnement*, 5éd., Dalloz, 2004, p. 681.

45) 대한 하위법령의 위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원자력안전법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프랑스에서 이러한 형태의 위임이 가장 현저하다. 이러한 하위법령의 위임은 첫째 특수한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의회의 입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가 어렵고, 둘째 기술의 발달과 사회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서 이다. 함철훈, 후쿠시마 사태 이후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제3회 공법학자대회 제2분과: 에너지법제분과, 2012, 48면.

sociales et de la Santé)” 공동으로 담당한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안전보호는 각각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단계⁴⁶⁾에서 국가의 대표자인 프레페(prefet)가 국민에 대한 예방조치의 책임자로서 공공질서유지의 경우와 위급한 경우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프레페는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지역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과 관련한 각각의 절차에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⁴⁷⁾

1.

의회는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방호에 대하여 입법을 통하여 관여하게 된다. 특히 2006년 TSN법과 “2006년 6월 28일 방사선물질과 폐기물의 지속적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법(la loi du 28 juin 2006 de programme relative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échets radioactifs)”의 제정으로 원자력안전과 폐기물관리 등에서 입법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의회의 원자력 분야에서의 관여는 법률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절차와 함께 이루어지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통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회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의회의 평가는 “과학·기술정책 의회사무국(l’Office parlementaire d’é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OPECST)⁴⁸⁾”과 상임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46)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는 우리와는 달리 수평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 헌법 제72조는 지방자치단체를 코뮌(commune),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레지옹(région) 및 헌법 제74조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7)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19.

48) 동 조직은 “1983년 7월 8일 법률(la loi n° 83-609 du 8 juillet 1983)”에 의해 조직된다. 고도의 과학기술영역에서 의회의 정부의 정책과 입법안에 대한 적절한 평가수단 부재를 인식하고 상·하원이 이에 대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따라서 OPECST는 양원이 공동으로 조직하고, 과학기술영역에서의 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게 된다. 이를 위해 OPECST는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동조직은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양원의 사무처와, 교섭단체의 대표, 60명 이상의 하원의원 또는 40명 이상의 상원의원 및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조직된다. 구성은 양원에서 각각 18명의 지명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양원의장이 순환하여 맡게 된다.

“·기술정책 의회사무국(OPECST)”의 역할은 의회가 과학적 혹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일정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보좌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의회사무국(OPECST)”은 경우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관련분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 의회사무국(OPECST)”에 매년마다 프랑스 내에서의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방호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게 된다. 이외에도 원자력위원회는 양원의 상임위원회에 특히 경제위원회(les commissions des affaires économiques)의 감사 시에 업무보고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의회가 원자력보호에 관한 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⁴⁹⁾

2.

정부는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방호에 대하여 행정규칙제정권을 통하여 관여하게 된다. 또한 원자력관련 위급사태의 발생 시에 정부는 시민의 보호에 책임을 진다. 원자력투명화법(TSN법)은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기초로 하여 원자력 기본시설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원자력투명화법의 규정은 2012년 1월 5일 오르도녕스에 의해 환경법전 제L. 593-1조 이하에 편입되었다. 또한 정부는 경우에 따라 환경법전 L. 125조 이하에 규정에 따른 “원자력안전의 투명성과 정보를 위한 고등위원회(Le Haut Comité pour la transparence et l’information sur la sécurité nucléaire)”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Conseil de politique nucléaire)

“원자력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2008년 4월 21일 데크레(Décret n° 2008-378 du 21 avril 2008 instituant un conseil de politique nucléaire)”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원자력정책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원자력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

49)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374.

, 국제적인 개발과 협력 속에서, 원자력산업정책, 에너지 정책, 연구, 원자력 안보와 안전 및 환경보호를 감시한다(제1조). 원자력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수상, 에너지 장관, 외무부장관, 경제장관, 산업장관, 통상장관, 연구관련 장관, 국방장관, 예산장관과 합참의장 등으로 구성된다(제2조). 동 데크레 제2조상의 위원들 이외에도 고위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ASN) 등이 관련 업무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제3조).

(2) 장관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장관⁵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원자력기본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첫째, 원자력 기본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영구정지 및 해체, 둘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의 정지, 유지 및 감시, 셋째, 원자력기본시설 및 폐기물시설에 적합한 가압장치(*des équipements sous pression: ESP*)의 제조 및 운영이 그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시설 등이 중대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당해 장관은 원전의 가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담당장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방사선방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당해장관은 부처간 공동시행규칙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부규정을 인가한다.⁵¹⁾ 현재는 “환경·지속가능개발·에너지 장관(*le minist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이 담당하고 있다.

(3) 및 방사선방호국(*la Mission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환경, 지속개발, 에너지부(*le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50) “환경, 지속개발, 에너지부 장관(*le Minist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이 담당한다.

51)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75.

et de l'Énergie)" 조직된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국(la Mission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부의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보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담당한다. 다만, 국방과 관련된 원자력 시설 및 활동과 전리성방사선에 의한 근로자의 방사능방호는 제외된다.

(4) (les préfets)

프레페는 데파르트망에서 정부의 대표자이다. 프레페는 공공질서유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위급한 경우에는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의 책임자로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한다. 원자력과 관련한 프레페의 역할은 원전관련허가신청 시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원자력기본시설과 관련한 시료채취, 폐기물, 기타 장애에 대한 "환경, 보건 및 기술 위험에 관한 지역협의회(le conseil départemental de l'environnement et des risques sanitaires et technologiques)"에 제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⁵²⁾

3. : 원자력안전위원회(Autorité de sûreté nucléaire: AS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분야의 투명성·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la loi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에 따라 설치된 '독립행정청(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 AAI)⁵³⁾이다. 동조직은

52)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p. 75-76.

53) 독립행정청에 관한 유래는 중앙행정청에게 일정한 자유와 독립성을 부여하여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주로 시민의 권리 및 자유에 관한 사항 즉, 개인정보 및 방송 등에 있어서 독립행정청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법인격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장관의 고권적 권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관련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독립행정청이 헌법이 정한 수상의 행정부관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독립행정청이 행정조직 다변화의 새로운 형태라고 한다면 이는 전통적인 행정청의 현대화에 대한 의지의 일환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 éd, Dalloz, 2010, v. p. 72 et s. 국내에서 프랑스 독립행정청에 관한 소개로는 전훈, 독립행정청에 관한 소고 -프랑스 독립행정청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49집, 2010 참조.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통제를 담당한다. 또한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들에게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원자력 운영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노동자, 환자, 공중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를 통제하는 기관이다.⁵⁴⁾ 또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자력 관련 규칙 제정 등을 제안하고 부처별로 규칙제정안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별적 허가를 발급하기도 하고, 정부에게 허가의 발급을 제안하기도 한다. 원자력 운영의 감시와 통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무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럽 내 혹은 국제적인 단계에서 협력도 수행한다. 즉, 국제적인 단계에서의 협력을 위해 방사선 관련 위급 사항 시에 제3국의 행정청에게 경고 및 정보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다른 국가의 원자력 관련 경고사례 및 정보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관련 위급 사항의 발생 시에 위기관리를 함에 있어서 다른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⁵⁵⁾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술적인 영역에 있어서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안전 연구원(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ureté nucléaire: IRSN)”에서 제공되는 전문적 감정평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성한 상임전문가그룹(Groupes permanents d'experts:GPE)의 조력을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부처와 11개의 지역청으로 구성된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총 471명이 정원이다.⁵⁶⁾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한 현행 법규정을 살펴보면, 환경법전 제L.592-1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제와 방사선방호 및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행정청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54) 안전과 투명성에 관련한 조직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외에도, “원자력안전에 관한 투명성과 정보를 위한 고등 위원회(Haut Comité pour la transparence et l'information sur la sécurité nucléaire: HCTISN)”와 같은 자문기관과 “공공보건고등위원회(Haut Conseil de la santé publique: HCSP)”와 같은 기관들이 있다.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u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19.

55)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u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6.

56)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u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19.

의사결정기구는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방호에 능력이 뛰어난 5명의 임명직 위원들로 구성되는 평의회이다.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원과 상원의장이 나머지 각 1명을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고 재임은 할 수 없다(제L. 592-2조). 원자력 안전관련 중요 권한을 부여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기구에 행정부와 의회가 각각 위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원자력안전정책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상호협력을 의미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직은 다른 모든 선출직·공직 또는 직업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L. 592-3조). 또한 위원들은 자신의 임기 중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서도 안 된다(제L. 592-5조). 위원임명 시에 당해 위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영역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유했거나 보유중인 각종 이권에 대해서 선언하여야 하고, 위원들은 직무수행 중에 자신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이권을 보유해서는 안된다(제L. 592-6조)는 규정을 둬으로써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위원들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제L. 592-7조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어떠한 정부나 타인 및 기관의 '지시(instruction)'받음 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 권한 하에 행정조직을 둔다. 동위원회는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두거나 계약에 의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제L. 592-12조). 또 제L. 592-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국가에 자신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다(제L. 592-14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협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있고(제L. 592-16조), 부여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장은 국가를 대신하여 사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제L. 592-17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방호에 관한 테크레(시행령)와 아레페(시행규칙)의 적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지침을 정할 수 있다(제L. 592-19조 제1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기본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에 관한 사항, 건설허가 후 일정한 내에 운영에 들어가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항, 중대하고 긴박한 경우의

정지에 관한 사항, 시설의 해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원자력보호, 공공보건, 공중위생, 자연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개별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제L. 592-20조). 이 결정은 원자력안전담당 장관에게 통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기본시설과 원자력기본시설에 적합한 가압장치의 건설 및 사용, 방사능물질의 수송 등에 있어서,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과 특별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통제를 담당한다(제L. 592-21조). 동위원회는 전국의 방사선방호에 관한 상시적인 감시를 조직화하고, 원자력안전감찰국과 방사선방호감찰국을 조직한다(제L. 592-21조 제2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또는 방사선방호에 있어서 통제와 감시에 참여하는 조직을 승인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법전 제L. 596-1조 이하에 규정된 감독관 및 공공보건법전 제L. 1333-17조 이하에 규정에 의한 방사선방호 감독관을 임명한다(제L. 592-22조). 또한 위원회는 원자력기본시설에 적합한 가압장치설비가 환경법전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공무원을 임명한다(제L. 592-23조).

4. : 방사성폐기물관리청(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ANDRA)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은 방사성폐기물의 장기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1979년 창설된 동기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 연구에 관한 1991년 12월 30일 법률(Loi n°91-1381 décembre 1991 relative aux recherches s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에 의해 “상·공업 공공기관(établissement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le)”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었고,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 지속적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2006년 6월 28일 법률(la loi du 28 juin 2006 de programme relative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에 의해 그 임무가 보완되었다.

연혁적으로 보면, 1974년 석유파동으로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로

, 이에 따라 10여기의 원자로를 건립하게 된다. 프랑스 정부의 원자력친화정책의 결과로 모든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의 양도 증대되게 된다. 양적으로 팽창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감독위원회(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담당하는 조직의 창설을 의회에게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1979년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이 조직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의 주요 임무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지표상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청은 망슈(Manche)의 저장시설을 관리하였다. 이러한 저장시설의 관리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을 안정화 및 개선시키는 기본적인 규정들을 정하게 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은 1984년부터 망슈 지역의 저장시설을 대체할 새로운 저장시설을 찾게 된다. 지자체별로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 오브(Aube)지역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⁵⁷⁾, 수차례의 현장 실사와 지역의원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1987년 7월 22일 수상이 공용수용을 위한 ‘공용성인정(Declaration d'utilité publique)’을 하게 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les déchets de faible et moyenne activité: CSFMA)의 저장시설이 오브지역에 건립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아그(Hague) 지역과 마르쿨(Marcoule) 지역에 저장되었다.

1991년 12월 30일 법률(Loi n°91-1381 décembre 1991 relative aux recherches s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은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원자력감독위원회(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에서 독립시켜, “상·공업 공공기관(établissement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le)”의 법적지위를 갖게 하였다. 동법은 또한 심층의 지층에 폐기물저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도록 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은 15년간 이 연구를 지속하도록 규정하였다.

57) 년간 안정된 심층의 지층에 고·중준위 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이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IV. 원자력 투명성 확보 체계

1. 확보를 위한 일반적 법체계

“투명성·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la loi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 loi TSN*)”은 원자력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권에 대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환경관련 정보의 구성요소로서 원자력에 대한 정보는 투명성이 가장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TSN법”은 의미를 가진다.

현행 환경법전 제L. 125-10조는 일반국민이 원자력기본시설운영자 혹은 방사능물질의 운송책임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는 원자력기본시설운영자 혹은 방사능물질의 책임자에 의해 수집되고 작성된 것으로서 자신의 운영 또는 수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리성 방사선의 노출과 관련한 위험과 이러한 위험과 노출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상의 조치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동조 제2문).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었을 경우의 소송은 행정재판의 관할 사항이다(제L. 125-11조).

환경법전 제L. 125-12조는 원자력안전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fiable*), 접근가능한(*accessible*) 국민의 정보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정보권은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영역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첫째, 원자력기본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민의 정보권이라든지, 원자력기본시설과 관련된 방사성물질 혹은 폐기물의 수송 시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보권을 들 수 있다. 둘째, 원자력시설에서 개별적인 방사선노출에 대한 노동자의 정보권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의료행위, 특히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정보권이 있다.⁵⁸⁾ 또한 국가는 동법전 제L. 591-1조에 정의된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방호의 방식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에 책임을 진다. 국가는 국민에게 국내에서의 원자력관련 활동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원전사고 발생 시에 국외에서 수행된 원자력활동에 대한

58)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p. 196.

제공해야 한다(제L. 125-13조). 원자력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자는 원자력관련 활동으로 인한 위험과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간에 대한 보호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원자력시설 등의 폐기물 유출에 관하여 모든 인간이 가지는 권리를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제L. 125-14조).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법전 제L. 125-15조는 원자력기본시설의 모든 운영자는 매년 원자력관련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보고서에 내용으로는 첫째,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방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 둘째, 시설부지 내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건과 사고에 관한 것과 발생한 사고가 인체의 건강 및 환경 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 셋째, 환경 상에서 시설의 방사선 혹은 비방사선 유출조치의 성질과 결과, 마지막으로 시설 부지 내에 저장된 방사성폐기물의 성질과 양 및 폐기물의 양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와 보건 및 환경 특히 토지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환경법전 제L. 125-15조에 규정된 보고서는 “원자력기본시설의 위생, 안전과 작업환경 위원회(Le 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conditions de travail de l'installation nucléaire de base)”에 제출된다. 동위원회는 자신의 권고사항을 피력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권고사항은 보고서의 발간과 제출 시에 첨부된다. 또한 동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동보고서는 “지역정보위원회(Le comité local d'information)” 및 “원자력안전의 투명성과 정보를 위한 고등위원회(Le Haut Comité pour la transparence et l'information sur la sécurité nucléaire)”에도 제출된다(제L. 125-16조).

2. 확보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5년 소위 “바르니에법(la loi Bamier)”에 따라 설치된 “국가공공토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NDP)”에 의해서도 예비조사나 공개적 토론이 이루어진다.⁵⁹⁾ 환경법전 제L. 121-1조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NDP)”는 독립행정청(AAI)이며, 콩세이 데파의 데크레로

59) , 앞의 논문, 63면.

사업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정비·설치의 검토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보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은 공공토론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국가계획의 목적, 성질, 타당성에 근거하여 공공토론은 이루어진다. 시민의 토론에의 참여는 사전예비조사의 개시로부터 공공조사의 종료까지 계획의 모든 수립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동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은 환경법전 제L. 120-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공토론위원회의 원자력기본시설에서의 권한은 “2002년 10월 22일 공공토론 및 공공토론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법률(Décret n°2002-1275 du 22 octobre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u débat public et à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⁶⁰⁾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국가정책에 대한 비상시적인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라면 지역정보위원회와 고등위원회는 원자력 주변의 인근주민 등이 상시적인 통제와 감시를 통한 상시적인 투명성 확보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지역정보위원회와 고등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CLI)

지역정보위원회는 환경법전 제L. 593-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나 혹은 다수의 원자력기본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한다. 동위원회는 지역 내의 원자력 시설과 관련한 원자력활동이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에서의 일반적인 조사, 정보수집, 협력의 임무를 담당한다. 동위원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전파한다(환경법전 제L. 125-17조). 지역정보위원회는 원자력기본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하나만 설치하거나, 인접한 다수의 원자력기본시설에 하나의 위원회만 설치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125-18조). 지역정보위원회는 하나의 원자력기본시설이 건설허가신청의 대상이 될 때 부터 설치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125-19조).

지역정보위원회는 환경법전 제L. 125-20조 제1항에 따라 첫째, 데파르트망 단계의 지

60) 밖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호·김지영·김영미·박기령, 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2 참조.

Conseil général의 의원, 꼬뮌 단계의 지방의회인 Conseil municipal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원과 관련 레지옹의 의원들 즉 각 단계별 지방의원들, 둘째, 당해 데파르트망에서 선출된 상·하원의 의원들, 셋째, 환경보호단체대표자, 노동자·재계 대표, 의료직역 대표자, 넷째, 관련분야에 유능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동조 제2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표자들, 관련 국가부처의 공무원, 레지옹 보건당국, 운영자대표자들도 위원회 회의에 옵저버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정보위원회는 하나 혹은 다수의 원자력기본시설 부지가 있는 데파르트망의 Conseil général의 의장(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 창설되거나 원자력기본시설의 부지가 여러 데파르트망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동결정에 의해 창설된다. 데파르트망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들을 지명한다. 동 위원회는 데파르트망의 장이 의장을 맡거나 위원으로 지명된 자 중 데파르트망의 지역의원이 의장의 직을 맡는다(환경법전 제L. 125-22조).

동 위원회는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포함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행할 수 있고, 지역 내의 원전시설의 방출 혹은 폐기에 의한 환경적인 관점에서 의 모든 조치 및 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125-24조 제1문). 시설운영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부처의 공무원은 지역정보위원회에 자신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제공한다(동조 제2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장관은 지역정보위원회에 원자력기본시설의 경계와 관련한 모든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125-26조). 지역정보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관련 장관에 대하여 자신의 지역 내에 설치된 부지와 관련한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관련 모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125-27조). 지역정보위원회와 “원자력안전의 투명성과 정보를 위한 고등위원회(Le Haut Comité pour la transparence et l'information sur la sécurité nucléaire)”는 환경법전 제L. 125-29조에 따라 자신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정보의 수집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2) 투명성과 정보를 위한 고등위원회(Le Haut Comité pour la transparence et l'information sur la sécurité nucléaire)

“투명성과 정보를 위한 고등위원회(Le Haut Comité pour la transparence et l'information sur la sécurité nucléaire)”는 원자력활동과 관련한 위험과 공공보건, 환경, 원자력안전 상에서 원자력활동의 영향에 관하여 정보제공, 협력, 논의하는 기관이다(환경법전 제L. 125-34조 제1문). 이를 위해, 동위원회는 원자력 관련 모든 문제와 통제, 정보 등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낼 수 있다. 또한 동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정보접근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관여하며, 환경법전 제L. 125-12조에서 정한 투명성을 보장하거나 향상하는 모든 조치들을 제안한다(환경법전 제L. 125-34조 제2문). 원자력안전담당 장관, 상·하원의 상임위원회 의장, “과학기술정책 의회사무국(OPECST)”의 장, 지역정보위원회 의장 혹은 원자력기본시설운영자들은 원자력안전과 통제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동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환경법전 제L. 125-34조 제3문). 동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전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대심적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선물질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련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한다. 원자력활동과 관련한 책임자,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국가부처의 공무원들은 동위원회에 자신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한다(환경법전 제L. 125-35조).

동위원회는 자신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매년 보고서를 발간한다(환경법전 제L. 125-36조). 위원회는 6년간의 임기로 임명된 위원들에 의해 구성된다. 구성은 양원에서 지명한 각각 2명의 의원들, 다수의 지역정보위원회의 대표자들, 환경보호협회와 공공법전 제L. 1114-1조에 의한 협회 대표자, 원자력활동 관련 책임자들의 대표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표자들과 원자력안전관련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영역 등에서 학식이 있는 인물들 중 선임된 자들로 이루어진다(환경법전 제L. 125-37조). 동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예산으로 계상된다(환경법전 제L. 125-39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원자력분야에서 투명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이 고도의 정책적·경제적 판단을 요구하는 결과 이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⁶¹⁾ 민주적 정당성은 정부와 의회에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61) “심각성에 비추어 원자력의 안전은 국민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자력의 안전을 정치적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안전이라 함은 국민이나 지역주민이 갖는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정치적 안전은 원자력시설의 설치 및 연장의 경

, 또한 독립행정청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로 인한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위험성이 인간 및 자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국민이 이에 항상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제공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부가 고도의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고 치부하여, 행정청에게 ‘판단여지’를 부여한 원자력과 관련한 분야라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원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원자력관련 투명성 확보는 환경법전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원자력분야에서의 행위주체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국민의 참여절차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V.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자로 보유국이며,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인접 국가들에 비해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친원자력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 보다 충분히 원전의 안전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의 에너지 수급정책을 고려할 때, 원전이 가지는 기술적·잠재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따른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친원자력에너지 정책의 기초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의존을 지속 한다고 가정하면, 프랑스의 원자력안전법제는 우리의 원자력안전법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원자력안전법제를 분석해 보면, 우리 법제의 몇 가지 보완점을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박군성, 앞의 논문, 171면.

수 있다.

첫째, 프랑스는 원자력안전관련 법제를 환경법전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법상의 사전예방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의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원자력 이용으로 인한 방사능의 누출이 인간과 환경에 충분히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면, 우리나라도 원자력법제에 있어서 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프랑스는 원자력사용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이 고도의 정책적·기술적 선택이라면, 적어도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는 국민에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시설의 부지선정에 있어서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서 관련 국민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단위의 “지역정보위원회”가 원전부지선정에서 원전건설, 운영, 해체 등에 있어서 상시적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보위원회’의 논의와 정보는 국가차원에서 “원자력안전의 투명성과 정보를 위한 고등위원회”에서 다시 취합되고 검토된다. 즉 지역단위·국가단위에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정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상의 주민의 의견개진절차나,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제1항의 공청회개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상의 주민투표를 두고 있는 우리법제를 고찰해보면⁶²⁾, 이는 사업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원자력관련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충분한 이해당사자의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는 원자력안전관련계획단계⁶³⁾에서 국가의 의무가 불분명하고, 프랑스의 ‘지역위원회’와 같은 상시적인 투명성 담보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⁶⁴⁾ 따라서 우리나라도 원자력에너지 이용이라는

62) , 앞의 논문, 177-179면 참조.

63) 비록 “원자력안전법” 제3조와 제4조 상에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의 주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되어 있다.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모두 프랑스의 “지역정보위원회”와 같

이익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라는 지역적 이익의 충돌에 대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프랑스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의회의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어 있다.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 이후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 행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자력관련정책을 확인하고 검토함으로써 행정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학·기술정책 의회사무국(l'Office parlementaire d'é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s et technologiques: OPECST)”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라든지, 당해상임위원회에 감사를 법제화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자력분야의 투명성과 관련한 조직에 있어서 의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제에 있어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원전의 건설허가 시에 추후에 원전시설의 정지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안전검사에 있어서 상시적인 통제수단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한다.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검사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원자력안전법제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력에너지 이용이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이라면, 정부 정책결정과 의회의 입법에 대한 충분한 환경적 고려와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잠정적으로는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원자력안전법제는 기술적 안전성에만 초점 맞추어져 있고 정책결정에서의 환경법적인 고려와 원전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와 투명성 보장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정책적 목표로 판단한 프랑스의 원자력안전법제가 가지는 시사점을 우리나라 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향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2013. 10. 31. 심사일 : 2013. 11. 18. 게재확정일 : 2013. 11. 28.

- ,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법제 고찰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화를 소재로-”,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김중천, “그린에너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적 연구”,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2011.
- 김태호,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담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 문병효,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 박기갑, “원자력 안전협약의 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1호, 1995.
- 박균성, “원자력 안전법제의 재검토”,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 _____,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21호, 2008.
- 이상윤,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 최정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와 관련한 법적 문제 -허가, 예외적 허가, 판단여지, 재량문제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36호, 2013.
- 함철훈, “후쿠시마 사태 이후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제3회 공법학자대회 제2분과: 에너지법제분과, 2012.
- 홍기원, “원자력의 위험관리에 관한 최근 프랑스 정치계의 쟁점: 2011년 3월 일본 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프랑스 양원에서의 토의쟁점을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2호, 2011.
- Jean-Marie PONTIER, “Les politiques et le droit de l'énergie nucléaire en France”, 「경희법학」 제45권 제4호, 2010.

Louis FAVOREU, Patrick GAÏA, Richard GHEVONTIAN, Jean-Louis MESTRE, Otto PFERSMANN, André ROUX et Guy SCOFFONI, *Droit constitutionnel*, 14e

éd., Dalloz, 2012.

Jean Rivero et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19 éd, Dalloz, 2002, 558 p.

Jean Waline, *Droit administratif*, 23 éd, Dalloz, 2010.

Michel Prieur, *Droit de l'environnement*, 5éd., Dalloz, 2004.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15 éd., Montchrestien, 2004.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2*.

ASN, *Rapport de l'ASN sur l'état de la sûreté nucléaire et de la radioprotection en France en 2011*.

Conseil national du débat, *Synthèse des travaux du débat national sur la transition énergétique de la France*, 2013.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Panorama énergies-climat*, 2013.

Ministère de l'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énergie, *La synthèse publique de l'étude des cout de référence de la production électronique*, 2008.

Résumé]

**Le régime juridique et les problématiques dans le domaine
de sécurité nucléaire**

– Étude comparative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

KIM JI-YOUNG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n dépit de l'accident Fukushima, la France, pauvre en ressources énergétique disponibles, a réagi par des mesures pour améliorer s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énergétique, en privilégiant le développement d'énergie nucléaire. En effet la politique nucléaire est basé sur un choix suivant: la fermeture de réacteur nucléaire ou la conduite d'énergétique nucléaire en réduisant le taux d'énergie nucléaire dans le mix énergétique. La France n'abandonnera pas l'énergie nucléaire dans un prochain avenir mais plutôt elle renforcera la sécurité et la transparence dans le domaine nucléaire. De ce fait, on peut citer les exemples français pour améliorer le système coréen.

Les activités nucléaires doivent s'exercer dans le respect de principes environnementaux en induisant la loi nucléaire au Code de l'environnement. Il s'agit du principe de prévention et du principe de précaution. De ce fait, la sécurité et la transparence vont être renforcées. En considérant que la politique nucléaire repose sur le choix politique, il est important que la transparence de procédure et l'accès à l'information soient assurés.

En analysant le système français, on peut observer quelques remarques: en premier lieu les activités nucléaires doivent s'exercer dans le respect de principes environnementaux. En deuxième lieu,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CLI) et CNDP participent à la transparence des activités. En troisième lieu, le rôle du Parlement est nettement défini. Enfin la sécurité nucléaire va être renforcée plus qu'avant.

제 어 , TSN 법, 원자력기본시설, 사전배려원칙, 지역정보위원회, 프랑스 원자력 안전위원회

Mots clés Régime juridique de la sécurité nucléaire, loi TSN,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INB), Principe de précaution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CLI), Autorité de sureté nucléaire(ASN)